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19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 기 도

목 차

I. 2019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4
- 2019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5

II. 2019년 보육정책 방향 및 목표

- 여건 및 추진방향 10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10

III. 2019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12
- ②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도비> 15
- ③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국·도비> 17
- ④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20
- 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22
- ⑥ 경기형 공보육 품질제고<도비> 25
- ⑦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29
- ⑧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도비> 40
- ⑨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도비> 42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국·도비>	43
② 어린이집 평가인증<비예산>	46
③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도비>	48
④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비>	53
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비>	57
⑥ 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59
⑦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비>	61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도비>	62
②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64
③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66
④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68
⑤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70
⑥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비>	75
⑦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78
⑧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도비>	80
⑨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83
⑩ 교재교구비<국·도비>	90
⑪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국·도비>	91
⑫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92
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비예산>	93
⑭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비예산>	94
⑮ 어린이집 필요경비<비예산>	95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101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105
③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108
④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111
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114
⑥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국·도비>	117
⑦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국·도비>	120
⑧ 대체교사 인건비<국·도비>	122
⑨ 보조교사 인건비<국·도비>	126
⑩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131
⑪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국·도비>	132
⑫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비>	133
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135
⑭ 영아(심화)·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예산>	136

IV.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39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140
○ 보육료 지원기준표 · 처우개선비 지원표	141
○ 주요 보육통계표	142

I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경기도 보육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도비 보조, 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일반사항

-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2019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8년도	2019년도	변경 사유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조리원) 지원															
제외대상	<p>○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시설장의 경우 65세, 종사자의 경우 60세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에 따라 만60세까지 만 인건비 보조가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10%;">생년월일</th> <th style="width: 40%;">상반기생(1958년 1월~6월)</th> <th style="width: 50%;">하반기생(1958년7월~12월)</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급상한 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6월 30일까지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td> </tr> <tr>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보조금 지원 상한연령 기준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60세 초과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 불가 	생년월일	상반기생(1958년 1월~6월)	하반기생(1958년7월~12월)	지급상한 년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보조금 지원 상한연령 기준임.		<p>○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p>- (삭제)</p>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			
생년월일	상반기생(1958년 1월~6월)	하반기생(1958년7월~12월)													
지급상한 년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보조금 지원 상한연령 기준임.														
○ 경기형 공보육 품질제고															
사업추진 안 내	<신 설>	○ 교육대상 : '18년 신입 원장(신규위탁, 민간에서 전환시설, 재임용)	2019년 신규사업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지원내용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1,700천원</u> (월·인) - 추가반 운영비 : 500천원(월·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u>435천원</u>(월·인) - 조리원 인건비 : 600천원(월·인)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1,800천원</u> (월·인) - 추가반 운영비 : 500천원(월·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u>445천원</u>(월·인) - 조리원 인건비 : 600천원(월·인) 	지원단가 인상												
운영기준	○ <신 설>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1세반 운영의 효율도모												
세부 지원내용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20%;">지원단가</th> <th style="width: 70%;">세부사항</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리원 인건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천원/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td> </tr> </table> <p>※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p> <p>※※ <신 설></p>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20%;">지원단가</th> <th style="width: 70%;">세부사항</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리원 인건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천원/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td> </tr> </table> <p>※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p> <p>※※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p>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제 목	2018년도	2019년도	변경사유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규 지정 후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 퇴소 완료하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은 후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규 지정 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하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신규지정 어린이집 퇴소대상 아동의 전원 시기 연장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아동 퇴소 후 익월 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아동 퇴소 외 추가반이 감소되는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
【붙임4】 동의서 서식	○ <신 설>	○ 보호자, 담임교사 동의 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규 신청을 위한 보호자, 담임교사 동의 철저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추진 안 내	<신 설>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유휴시설 등을 활용(리모델링)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조성 및 부모육아 지원	2019년 신규사업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추진 안 내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생략) · <신설>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생략) · (생략)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비용 · (생략) · <신설>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현행과 같음)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 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비용 · (현행과 같음)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어린이집 자신회득성 물품 및 어린이집 운영 경비 성격의 화재보험 등 제외 항목 구체화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조리원 근로 조건 및 업무 내용	- 1일 3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문구 및 체계 정비

제 목	2018년도	2019년도	변경사유
지급상한	- 보건복지부의 「2018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준용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
경과조치	- 정원 39인 이하 : ' 16.12.31.이전에 채용된 60세 초과~70세 이하 조리원 (1947년 1월생 ~1956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정원 40인 이상 : ' 17.12.31.이전에 채용된 60세 초과~70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 ~1957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정원 39인 이하 : ' 16.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2세 이하 조리원(1947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정원 40인 이상 : ' 17.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1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개요	○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수납한도액 변경으로 지원단가 인상 (2019. 3월부터 적용)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02	280	305	수납한도액	309	286	312		
정부지원 보육료	220	220	220	정부지원 보육료	220	220	220		
차액보육료	82	60	85	차액보육료	89	66	92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지 원 액	○ 월 1,600천원/인	○ 월 1,800천원/인	지원단가 인상
-------	---------------	---------------	---------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기준	<신 설>	※ 임신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지급기준 명확화
세부지원 대상	<신 설>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지원요건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②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③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전체 삭제>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 목	2018년도	2019년도	변경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생략)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지급방식’으로 위치이동)	지원요건 ①,②,③ 삭제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정부 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대체교사는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 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 (삭제)	지급대상 명확화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유의사항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제 적용 제외)	문구 및 체계 정비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지원기준	<신 설>	※ <u>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u>	지급기준 명확화
세부지원 대상	<신 설>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지원요건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②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③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전체 삭제>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생략)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지급방식’으로 위치이동)	지원요건 ①,②,③ 삭제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급대상 명확화

제 목	2018년도	2019년도	변경사유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대체교사는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 (삭제)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유의사항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제 적용 제외)	지급기준 명시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신청 및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 ※ (신설) - <신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지급대상 명확화 실제 보육업무 수행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외대상	-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	- 보조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시간연장교사	지원제외대상 명확화
유의사항	<신 설>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제 적용 제외)	유의사항 명시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급액	- 보육교사 : 일 71,2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 2018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8,900원 반영 ※ (신 설) - 조리원 : 일 61,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 20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반영 ※ 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건비를 지원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보육교사 : 일 80,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반영 ※ 단, 근무 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리원 : 일 66,8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반영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반영 20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반영 지원기준 명확화
지급방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신 설)	- (현행과 같음) ※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 공공형, 가정민간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기준 변경 (60세 → 65세)

Ⅱ. 2019년 보육정책 방향 및 목표

여건 및 추진방향

- 경기도는 전국 29.8%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보육예산은 '19년 도 전체 예산의 12.7%를 투입하고 있으며, 보육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사업 추진
 - ※ 어린이집('18년 12월말) : 경기도 11,682개소, 전국 39,171개소
 - ※ 보육예산('19년 본예산) : 보육 2조 6,856억원, 도전체 21조 974억원
- ▶ 국가 보육정책에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아이사랑놀이터 확대,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도입으로 보육의 품질향상과 수혜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정책
목표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



중점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Ⅲ. 2019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도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목 표

- 보건복지부 : 매년 450개소 이상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경 기 도 : 매년 150개소 이상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2개(남부 51 , 북부 11)
 - ※ 2019년도 본예산 기준이며, 시군 추가수요 발생 시 추경반영 추진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기자재비 지원 등
-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16 ~ '18)

연도별	사업량(개소)			유 형			비고
	합계	남부	북부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248	182	66	44	202	2	
2018	145	110	35	12	131	2	
2017	71	54	17	22	49	0	
2016	32	18	14	10	22	0	

- 지원내용
 - 일반신축 : 개소당 최대 922백만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개소당 110백만원
 - 장기임차 : 개소당 210백만원
 - 기자재비 : 개소당 10백만원

○ 총사업비 : 11,666,24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2	11,666,240	5,977,120	2,916,560	2,772,560	
남부	51	9,840,240	5,064,120	2,460,060	2,316,060	
북부	11	1,826,000	913,000	456,500	456,500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50,291,288	16,823,062	21,801,986	11,666,240	
남 부	39,017,309	13,190,169	15,986,900	9,840,240	
북 부	11,273,979	3,632,893	5,815,086	1,826,000	

□ 사업추진 안내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가능시설 (시행규칙 제9조)
- (명칭) : 어린이집 명칭은 “○○어린이집” 으로 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군,구청장 개인성명이 아닌 oo시장, oo군수로 기재(18년 시행)
- (설치) : 영유아보육법 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 시설)에 설치
-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참고 1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단위: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축	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23		32		71		145			62		
남 부	18		18		54		110			51		
수원시		1			1	9		7		5	4	
성남시	1			2	1	1	1	2				
부천시	1		2	1	5	2		2	1			
용인시						1		6			5	
안산시	1				1		2	3				
안양시										2		
평택시	1							7			6	
시흥시	1	3	1			5	3	18			7	
화성시	1	4	1	5	6	6	1	19				
광명시			1			3		1				
군포시								3			3	
광주시	1							4				
김포시				1		6		7		1		
이천시			1						1		2	2
안성시				2				2			2	
오산시					1	5		5			4	
하남시		2				1	2	9			4	
의왕시								4			4	
여주시			1									
양평군	1											
과천시												
북 부	5		14		17		35			11		
고양시		1		2	1		1	9			4	
남양주		4	2	6		8		14			3	
의정부				1			1	3		2	1	
파주시						1		2			1	
양주시					1	1	1	1				
구리시				2	1			3				
포천시			1		1							
동두천												
가평군					1							
연천군					2							

1-2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도비

중소기업의 직장(공동)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확대에 일가정의 조화문화 조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규모 미만의 사업장
 - 단, 설치의무 대상(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중 산업단지형의 대표기업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 ※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지원제도와 연계한 기업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건립비, 매입비, 전환비) 지원
- 지원기준 : 단독 최대 2천만원 ~ 산업단지형 최대 1억원

지원대상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비고
의무설치 규모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2천만원	소요비용의 5% (근로복지공단 : 소요비용의 90% 지원)
	공동		4천만원	
	컨소시엄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5천만원	
	산업단지형		1억원	

- 단독 : 1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 공동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 ※ 설치의무 사업장(대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컨소시엄형 :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 산업단지형 : 산단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 이상)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

○ 지원금 종류

- 시설건립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신·증·개축에 소요된 건축비
 - ※ 제외내역 : 토지매입비, 외부 부지기반 공사비, 조경공사비, 자사·계열사 사급 자재비, 증축의 사유로 시설전환시 기존시설에 대한 공사비
- 시설매입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매입에 소요된 매입비
- 시설전환비 : 건물(소유·매입·임차)을 직장어린이집 시설구조 변경에 소요된 비용, 기존시설 확충이전 소요 설치비, 기타 설비비·비품비 등
 - ※ 제외내역 : 토공 및 기초공사비, 골조 및 조적공사비, 지붕 및 흠통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공종전체 비용

□ 추진절차

○ 사업절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사업예산 : 544백만원 (도비 100%)

※ 소요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지원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도비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연 혁

- 시범 운영 : 2011년 7월~
- 본격 운영 : 2012년 7월~
-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 : 2018년 1월~
 - 운영비 지원 상한액(월 최대 1,000만원) 폐지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기 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610개소(남부 467, 북부 143)
- 사 업 비 : 23,524백만원(국비 12,836, 도비 6,123, 시·군비 4,565)
 - ※ 신규 선정 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예정

□ 지원기준

- 교사 수, 아동현원 등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 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구 분	단 가	기 준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맞춤·종일·합반 1개반당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당
3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23,524,39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10	23,524,392	12,835,746	6,122,803	4,565,843	
남부	467	17,696,492	9,563,846	4,558,403	3,574,243	
북부	143	5,827,900	3,271,900	1,564,400	991,600	

○ 연도별 내역(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계	56,609,224	18,791,219	21,499,880	23,015,741	
남부	46,190,905	13,537,244	15,552,410	17,101,251	
북부	17,115,935	5,253,975	5,947,470	5,914,490	

□ 연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495개소(증59)	588개소(증93)	608개소(증20)	610개소(증2)	
남부	366개소(증38)	440개소(증74)	459개소(증19)	467개소(증8)	
북부	129개소(증21)	148개소(증19)	149개소(증1)	143개소(감6)	

참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2018. 12월 말 현재]

구 분	개소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합 계	610	374	34	48	27	19	21	32	31	7	17
남 부	467	290	27	38	23	16	15	18	23	4	13
수원시	44	33	4	4	3	0	0	0	0	0	0
성남시	29	28	1	0	0	0	0	0	0	0	0
안양시	27	22	0	2	0	1	0	0	2	0	0
부천시	45	34	2	3	2	1	1	2	0	0	0
광명시	28	20	0	4	1	0	2	1	0	0	0
평택시	32	15	4	3	1	1	0	2	3	1	2
안산시	35	14	4	1	5	0	3	4	4	0	0
오산시	19	17	0	1	0	0	0	0	0	0	1
시흥시	27	18	2	5	1	1	0	0	0	0	0
군포시	6	6	0	0	0	0	0	0	0	0	0
의왕시	4	2	0	0	0	1	1	0	0	0	0
하남시	8	1	0	2	1	1	1	0	1	0	1
용인시	32	20	1	4	2	2	1	0	2	0	0
이천시	24	7	3	1	0	2	2	3	3	0	3
안성시	28	12	0	2	3	4	0	3	3	1	0
김포시	12	9	1	0	2	0	0	0	0	0	0
화성시	14	9	1	1	1	0	1	0	1	0	0
광주시	22	16	0	0	0	1	1	0	0	1	3
여주시	17	3	2	4	1	0	1	1	3	1	1
양평군	14	4	2	1	0	1	1	2	1	0	2
북 부	143	84	7	10	4	3	6	14	8	3	4
고양시	31	27	0	2	1	0	1	0	0	0	0
의정부	13	8	2	0	0	0	0	2	1	0	0
남양주	36	25	1	3	0	1	2	3	1	0	0
파주시	15	6	1	1	2	0	0	3	1	1	0
구리시	7	4	1	1	0	0	0	1	0	0	0
포천시	20	6	2	0	1	2	0	1	3	2	3
양주시	8	5	0	0	0	0	1	1	1	0	0
동두천	3	1	0	0	0	0	1	1	0	0	0
가평군	6	0	0	1	0	0	1	2	1	0	1
연천군	4	2	0	2	0	0	0	0	0	0	0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7년 1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사업량 : 영·유아 21,631명(남부 16,135 / 북부 5,496)
- 지원내용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8,735,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1,631	8,735,400	2,554,416	6,180,984	
남부	16,135	6,486,480	1,668,240	4,818,240	
북부	5,496	2,248,920	886,176	1,362,744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급기준
 - 전월 말일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 해당 월 미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및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중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1-5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량 : 610개소(남부 467, 북부 143) ※'18. 12월말
- 사업비 : 5,720,400천원(도비 1,573,452천원, 시군비 4,146,948천원)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 고
월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5,720,4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610	5,720,400	1,573,452	4,146,948	
남부	467	4,356,000	1,048,212	3,307,788	
북부	143	1,364,400	525,240	839,160	

- 연도별 내역(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계	13,643,202	4,488,797	4,878,360	5,220,130	
남부	10,799,835	3,340,145	3,661,560	3,798,130	
북부	3,787,452	1,148,652	1,216,800	1,422,00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요건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text{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times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지원기준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 따른 보육교직원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공보육의 품질제고 도모화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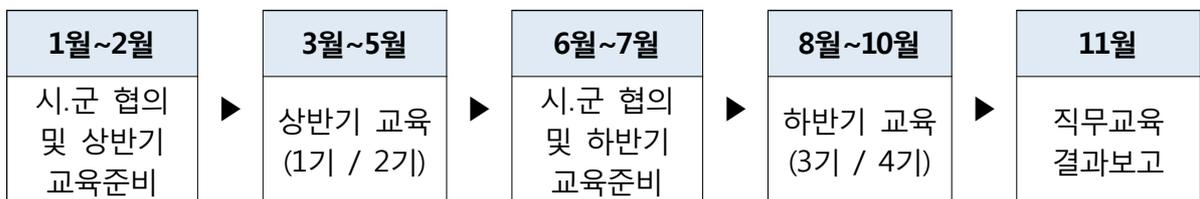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량 :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60여명
 - 교육운영 : 총 4 회 / 40명 이내
- 주관 : 도 보육정책과 직접 운영
- 교육대상 : ‘18년 신입 원장(신규위탁, 민간에서 전환시설, 재임용)
 - ※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교직원 역량강화 : 원장 및 교사 연수, 재무회계교육 : 컨설팅 및 소그룹교육
- 총사업비 : 29,800천원(도비 100%)

□ **교육핵심가치**

-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 개방성

□ **추진 일정**



참고 1

공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계획

□ 목 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40%까지 확대 등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 계획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을 통해 공보육의 품질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 핵심 가치

- (공공성)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 이해
-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전문성) 운영자의 리더십과 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 전문성 강화
- (안전성)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보육안전성 확보
- (개방성) 물리적 환경 구성과 부모참여를 통한 보육개방성 확대

□ 교육과정 및 대상인원 : 총 5개 과정 약 160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직무교육과정	
	원장일반(5과정)	보육교사(4과정)
교육대상	160명	1,422명
교육과정	5과정 11주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 개방성)	4과정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개방성)
교육시간	30시간	26시간

□ 기대효과

- 공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 국공립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통해 아동의 건강한 보육에 기여
- 국공립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통해 道 전체 어린이집 적용가능성 창출과 경기도에 맞는 독자적인 보육정책 및 방향제시

참고 2

공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26시간)

과정	주제	목적	시간 (26)
공공성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 보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현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2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 사업 이해	•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근거가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정 -상호작용 -보육환경 -평가인증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체계를 이해한다.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영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고 관계중심의 상호작용을 적용할 수 있다. • 하루일과 중에 상호작용의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 보육환경의 중요성을 안다. • 영아를 위한 안전한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 유아를 위한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도전적요소가 포함된 실외 환경을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다. • 평가인증의 목적과 운영체계를 이해한다. • 평가인증지표를 이해한다. • 영아의 발달과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다. •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다. • 보육일지 작성의 필요성 인식과 바람직한 작성방법을 안다. • 하루일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 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 영유아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를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유형에 대해 안다. •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도울 수 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행동 이해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행동관찰 -부적응행동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를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유형에 대해 안다. •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도울 수 있다. 	4
안전성	• 어린이집 안전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2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리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 먹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함	2
	•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방성	• 부모 소통 및 지역사회 협력-talk! talk!!	• 마음읽기와 경청하기 등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혀 부모상담의 전문성을 높인다.	2

□ 원장 직무교육 (30시간)

과정	주제	목적	시간 (30)
공공성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 보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현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2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사업 이해 - 따복어린이집 이해	•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근거가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6
	•어린이집 회계 실습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 먹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집 운영평가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성	• 원장 감성리더십 -리더십의 이해 -감성 리더십 -보육현장에서의 리더십	• 리더십의 개념, 구성요소, 유형을 이해한다. • 감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안다 • 감성리더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다. • 보육현장에서 감성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4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표준보육과정 총론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보육과정 운영지원	•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의기초를 이해한다. • 0-1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다. • 2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4
안전성	• 어린이집 안전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2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리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 먹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함	2
	•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방성	• 부모 소통 및 지역사회 협력 -또 하나의 부모 '어린이집'	•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열린 보육기관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프로그램 및 환경을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을 기른다.	2

1-7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08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업량 : 289개소(남부 186, 북부 103)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 500천원 / 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45천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 600천원 / 인
- 총사업비 : 24,15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89	24,152,020		6,424,980	17,727,040	
남부	186	15,473,400		3,238,554	12,234,846	
북부	103	8,678,620		3,186,426	5,492,194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64,804,280	17,506,060	23,146,200	24,152,020	
남부	41,752,517	10,896,017	15,383,100	15,473,400	
북부	23,051,763	6,610,043	7,763,100	8,678,620	

□ 사업 추진 안내

가.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복 불가
- 참여 기본요건
 - 제2차 평가인증(2차 지표 또는 3차 시범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3차 지표 85점 이상)
 -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 등급이 A등급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중인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
 - 신규지정 시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전년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가 465명**(경기도 읍면동 평균 0~1세 아동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읍면동에 1개소, 많은 경우 2개소까지 지정 가능 (기 지정 어린이집 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260,977명(18. 12월말 기준 경기도 0~1세 아동 수) / 561개 (경기도 총 읍면동 수)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45)	맞춤형 보육지원 (20)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0)
인프라·특성화 (55)	운영기간·정원충족 (20)	건물소유·안정성 (20)	시·군 특성화지표 (15)

※ [붙임 1] 세부 선정기준표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미설치된 행정동 소재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0세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선정 및 지정절차



※ 시·군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량 내 대체 선정 가능

나.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 입소기준 :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시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사후관리

- 홍보 : 도, 시·군을 통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 표창 : 우수 보육교직원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어린이집 원장 컨설팅 및 원장 자유편모임 공유
- 모니터링 :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대상 연1회 실시(4분기 중)
 - 제외대상, 운영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등 보육품질관리 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단가	세 부 사 항
추 가 반 보육교사 인 건 비	1,800천원/인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불가)의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추 가 반 운 영 비	500천원/반	•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퇴직적립금 • 추가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의 제수당,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 추가반 보육교사 배치에 따른 비용 우선사용 원칙
시간연장 추 가 반 근무수당	445천원/인	•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주간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수당 ※ 보건복지부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동일 기준 시간연장 미지정의 경우도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조 리 원 인 건 비	600천원/인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은 후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규 지정 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하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운영비는 일할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시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3명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라.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시·군 확인 및 평가인증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0세아 전용 유지 가능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
 - 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

○ 운영포기

-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가점	감점
맞춤형 보육지원 (20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70% 이상~	15	80% 이상 +3점	
		· 65% 이상~70% 미만	10		
		· 65% 미만	7		50% 미만 -3점
	시간연장보육 실시 (5점)	· 지정·실시	5		
		· 미지정·실시	3		
		· 실시가능	1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5점)	· 10년 이상	5	12년이상 +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3		
		· 5년 미만	1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70% 이상	10	80% 이상 +3점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40% 미만 -3점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	자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점)	· 3건 이상	10	최근 3년 이내 시상 +3점	
		· 2건 이상	7		
		· 1건 이상	5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2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0점)	· 5년 이상	10	7년 이상 +3점	
		· 3년 이상~5년 미만	7		
		· 3년 미만	5		
	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 농어촌지역 50% 기준 (10점)	· 80% 이상~	10	90% 이상 +3점	
		· 75% 이상~80% 미만	7		
		· 70% 이상~75% 미만	5		
건물소유 및 안정성 (20점)	어린이집 소유형태 (10점)	· 자가	10		
		· 전세	5		
		· 월세	2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10점)	· 일치	10		
		· 불일치	0		
시·군 특성화지표 (15점)	산업단지, 신혼부부거주, 영아보육수요, 입소대기 등 * 시·군별 설정 적용 (15점)	· 상	15		
		· 중	10		
		· 하	7		
기타 가점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 열린어린이집 지정 (우수형, 지자체형)	5		
합계					

※ 총 합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 : 0세아, 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아동수	기존 1:3 보육 반 수 (a)	전용 1:2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3명	1	2	1	
4명	2	2	1	
5명	2	3	1	
6명	2	3	1	
7명	3	4	1	
8명	3	4	1	
9명	3	5	2	
10명	4	5	2	
11명	4	6	2	
12명	4	6	2	
13명	5	7	2	
14명	5	7	2	
15명	5	8	3	
16명	6	8	3	
17명	6	9	3	
18명	6	9	3	
19명	7	10	4	
20명	7	10	4	

<1세반> <혼합반 : 1세아만 1명 있을시> <시간연장반 : 0세아 3명 이상시>

아동수	기존 1:5 보육 반 수 (a)	전용 1:3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4명	1	2	1	
5명	1	2	1	
6명	2	2	1	시간연장 추가반의 경우 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7명	2	2	1	1개반 1:4 허용
8명	2	3	1	
9명	2	3	1	
10명	2	3	1	1개반 1:4 허용

- 예1)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7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2)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3) 시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0세,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 예4)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미만인 경우 1:5 반편성하므로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미지원

[붙임 3]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입)	최초 인가일	(연/월/일)
대표자 *인가종		전화번호		원장 및 대표자 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재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참여불가)
원장 *경력증명서		FAX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결과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신규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통과점수 (점)] - <input type="checkbox"/> 2차지표 <input type="checkbox"/> 3차지표					
	<input type="checkbox"/> 신규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재재인증 / <input type="checkbox"/> 미인증(참여불가) [인증년도(년), 등급 (등급)] - <input type="checkbox"/> 3차 통합지표					
농어촌특례 및 탄력편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중복불가)			정부인건비 지원 및 공공형,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참여불가)
건물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전세) 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임대(월세) 보증금/임대료(/)		현재임대 계약기간	(연/월/일)~ (연/월/일)	
시간연장 운영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정·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지정·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가능	
영유아	정원/현원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정원	명	명	명	명	명
	현원	명	명	명	명	명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총인원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	시간연장 (월급여형)	시간연장 (근무수당형)	특수교사	휴직자 (출산육아)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보육교사 자격	현 어린이집 임용 일자			반		
원장	○○○	보육교사 1급	○○○○-○○-○○			없음/○○반(0세반)		
담임교사	○○○	보육교사 1급	○○○○-○○-○○			○○반(1세반)		
담임교사								
담임교사								
담임교사								
시간연장								
시간연장								
휴직(출산)								

위와 같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어린이집 대표자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앞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서

어린이집명					
보호자 동의율	___%	아동수(현원)	___명	동의 부모 수	___명
담임교사 동의율	___%	담임교사수	___명	동의 담임교사수	___명

○ 담임교사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성 명	직 위	서명(인)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보호자 동의서

연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참여 동의여부	아동명	보호자명	맞벌이여부 (입소우선순위 기준)	서명(인)
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7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8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9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0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1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2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3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4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5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16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사업참여 동의율 보호자와 보육교사 각각 80% 이상
- 계 산 식 1 = (동의 담임교사 수) / (전체 담임교사 수) * 100
- 계 산 식 2 = (동의 보호자 수) / (재원아동 수) * 100
- ▶ 보호자, 담임교사 동의 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시간연장형 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는 제외)
 - ※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담임교사 산정에서 제외
- ▶ 보호자 동의는 부모, 조부모, 보호자 중 1명만 동의해도 모두 동의한 걸로 간주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제 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 ○ ○ (1900년 0월 0일생)

소 재 지 :

위 어린이집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관인)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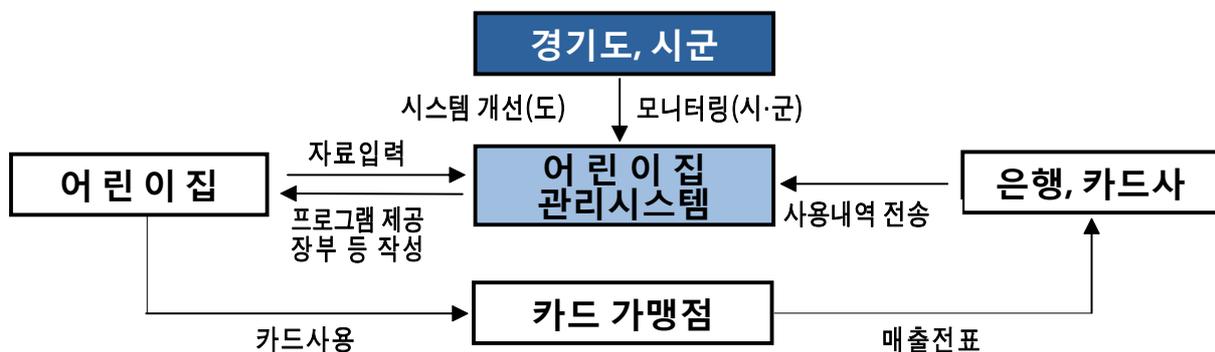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7년도 ~ 계속
- 소요예산 : 19,400천원 (2019년도 사용자교육 운영비)
- 사용대상 : 경기도 소재 전체 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의무 사용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비를 승인(등록)된 결제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하고, 내역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시스템 (<http://www.accgg.co.kr>)에 등록 관리

※ 클린카드란?

-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로 지정은행(NH농협, 신한)에서 발급
- 원장이 지정은행(NH농협, 신한)에서 클린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발급 후 1주일 소요)

※ 시스템등록 문의(헬프데스크) 1644-6840

○ 운영체제



○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시스템 운영 총괄,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사용자관리
- 시군 :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 어린이집 : 시스템 이용, 클린카드(어린이집 운영카드) 사용
- 은행(카드사) : 운영 사업비 부담, 시설의 카드사용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대행, 사용자 지원

○ 시군 기관관리자의 관리

- 신규 사용자는 시스템 등록, 사용 종료자는 시스템 등록 말소

<제 출 양 식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용기한	비고
						신규, 사용종료

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 혜택

- 시스템 사용료 무료 및 카드사용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연 1회)
- 사용자 활용교육 실시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 연중 시스템 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정기교육 : 매주 수요일 15:00 ~ 17:00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전산교육장
 - 정기교육 : 매주 수요일 15:00 ~ 17:00 / 온앤온정보시스템(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5)
 - 수시교육 : 시군이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요청할 경우/ 시군 전산교육장 등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편리한 기능

- 회계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출력물 없이 전자파일로 관리
-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회계처리 가능
-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업로드를 활용한 전표 처리 및 계정과목 처리에 따른 각종 회계문서 자동생성, 보육통합(CIS) 회계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회계보고 전에 자가검진 기능으로 오류조치 가능
- 예산결산관리의 예산보고서/결산보고서 작성 기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명단을 연동하여 보육료 및 기타 필요 경비 청구/수납, 정산관리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교직원명단을 연동하여, 봉급 및 퇴직금, 휴가 관리

-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설치로 수요자 중심 육아 환경 조성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업량 : 2019년 7개소 ※ 남부 3(성남, 안산, 양평) 북부 4(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 선정기준 : 미설치 시군, 인구대비 시설 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우선
- 소요예산 : 1,50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유휴시설 등을 활용(리모델링) 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조성 및 부모육아 지원
 - * 실내놀이터 이용,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 실시
 - 지원내용 : 100만원/m², 개소당 300m²(바닥면적 기준)까지 최대 3억원

다. 향후계획

- 정책목표 : 민선7기 내 22개소 추가, 100개소로 확대
 - 기설치 현황 : 26개 시·군, 78개소
 - ‘19년 7개소, ’ 20년 8개소, ‘21년 7개소 이상 확충 계획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도비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4개 분야 20개 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 사업개요

- 사업량 : 4,970개소(남부 3,682, 북부 1,288)
 - ※ 제외대상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린이집, '18년 열린어린이집, 당해 연도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활동기간 : 3~12월(10개월간)
- 구성 : 사군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하며,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구성인원 : 250여명 (남부 190여명, 북부 60여명)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부모의 활동기간을 연속하여 최대 2년으로 제한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인자 (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 부모는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 제고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 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부모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신설)
- 최근 1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변경)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부모 모니터링 대상 제외 기준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 평가인증(재인증)일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18.11.15.~2021.11.14.(3년)인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 제외기간은 2018.11.15.~2019.11.14. 까지임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월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변경)
 -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인점검 대상 명단을 시도에 공문으로 발송(점검실시 익월 초)
 - * 확인점검을 받았으나 대상 명단 통보 이전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에서 요청 또는 지자체가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조치 가능
 - 언론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신설)

○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4)	안전관리(6)	급식관리(5)	위생관리(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관리 - 응급조치 체계 - 비상약품 구비 - 투약의뢰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 관리 -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 등·하원 인계과정 - 차량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권리존중 실천 - 아동학대 예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 및 영양관리 - 식품 알레르기 관리 - 조리과정 위생 - 식자재 보관규정 - 식자재 보관장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 조리직원 복장 위생 - 급배식도구 및 과정 위생 - 식수 및 우유 등 관리 - 실내공간 및 놀잇감 청결 -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 환기 및 온도 관리

○ 모니터링 등급 평정방식

- 각 영역의 지표별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Y)’ 또는 ‘미충족(N)’ 에 체크

영역(지표 수)	‘충족(Y)’ 지표 수		
1. 건강관리(4)	4개	2~3개	1개 이하
2. 안전관리(6)	6개	4~5개	3개 이하
3. 급식관리(5)	5개	3~4개	2개 이하
4. 위생관리(5)	5개	3~4개	2개 이하
	↓	↓	↓
	우수	양호	개선필요

○ 예산 집행기준

구 분	세부 내역
활동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개소에 한함 - 부모 4만원 내외, 보육·보건전문가 5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부모 1인 파견 시 5만원 내외 지급 가능
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컨설턴트 : 8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컨설팅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소 실시
운 영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단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대관료, 교재제작비 및 현장학습비, 사업평가비 등은 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집행 • 교육여비 : 부모, 보육·보건전문가 : 4만원 내외/1회당

○ 총사업비 : 507,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계	4,970	507,000	253,500	129,250	124,250	
본 청	3,682	378,200	189,100	97,050	92,050	
북부청	1,288	128,800	64,400	32,200	32,200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1,850,870	696,000	647,870	507,000	
본 청	1,360,838	502,800	479,838	378,200	
북부청	490,032	193,200	168,032	128,800	

2-2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예산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및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9. 1~5월 인증제로 진행하고 '19. 6.부터 의무평가제 시행

□ 평가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인증지표 : 통합지표 (4영역, 21지표, 123단위)
- 인증과정 : 3단계 (참여확정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인증기준 : 4등급 (A-B-C-D)
- 인증주기 : A등급 : 4년, B·C 등급 : 3년, D등급 : 불인증
- 인증취소 : 행정처분, 휴·폐지 등

□ 연도별 추진실적

- 평가인증 유지율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구분	전체 어린이집수(A)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수(B)				평가인증율(%) (B/A)*100
			소계	신규인증	재인증	기인증	
2016년	경기도	12,120	9,620	1,072	2,351	6,197	79.4
	전 국	41,084	32,795	3,308	7,775	21,712	79.8
2017년	경기도	11,825	9,662	1,126	2,305	6,231	81.7
	전 국	40,238	32,630	3,406	8,253	20,971	81.1
2018년	경기도	11,682	9,527	608	1,631	7,179	81.6
	전 국	39,171	31,625	1,655	5,524	24,295	80.2

- 평가인증 참여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구분	참여확정 어린이집수	참여확정 후 포기 어린이집수	결과발표 어린이집수		비고
				인증	불인증	
2016년	경기도	3,655	89	3,487	79	
	전 국	11,835	309	11,271	255	
2017년	경기도	3,606	63	3,495	48	
	전 국	12,202	203	11,833	166	
2018년	경기도	2,375	46	2,268	61	
	전 국	7,674	133	7,247	294	

참 고

시·군별 평가인증 유지율 현황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전체 어린이집(A)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B)	(B/A) × 100	비고
경기도	11,682	9,527	81.6	
남 부	8,585	7,132	83.1	
수원시	1,135	953	84.0	
성남시	657	570	86.8	
부천시	605	535	88.4	
용인시	965	758	78.5	
안산시	526	460	87.5	
안양시	472	451	95.6	
평택시	413	311	75.3	
시흥시	440	371	84.3	
화성시	834	694	83.2	
광명시	309	257	83.2	
군포시	273	218	79.9	
광주시	345	251	72.8	
김포시	447	332	74.3	
이천시	175	155	88.6	
안성시	193	145	75.1	
오산시	261	238	91.2	
하남시	226	166	73.5	
의왕시	133	112	84.2	
여주시	73	64	87.7	
양평군	55	47	85.5	
과천시	48	44	91.7	
북 부	3,097	2,395	77.3	
고양시	817	610	74.7	
남양주시	658	536	81.5	
의정부시	449	341	75.9	
파주시	467	346	74.1	
구리시	169	138	81.7	
양주시	247	195	78.9	
포천시	110	88	80.0	
동두천시	109	75	68.8	
가평군	36	35	97.2	
연천군	35	31	88.6	

2-3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 도비

어린이집 중복점검을 최소화하고 시·군간 행정처분 격차를 줄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도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사업개요

- 지도점검을 정기점검+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평가인증 컨설팅 통합 사전컨설팅 위주의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실시
- (목 적) 어린이집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 (방 법) 효율적 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기관간 합동컨설팅 실시,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모니터링을 통한 단독컨설팅으로 운영
- (원 칙) 중복점검 최소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신뢰 확보
 ➔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 추진계획

- 시·군별 행정처분 불균형 해소 및 행정처분을 감소(8.04→ ‘20년까지 5%)
 -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 사전모니터링(법규위반 예방) 실시
 - ※ 법위반(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
- 평가인증 어린이집 질 제고 및 재무회계 컨설팅으로 운영여건 개선
 -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감대 확산
 - 공무원 및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 2회 교육
- 연도별 추진목표

추진내용(단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행정처분율(%)	5~8%	8.04%	9.2%	7%	5%

□ 목 적

정기점검·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평가인증 컨설팅을 보육컨설팅으로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 방 법

어린이집 질 관리의 지속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사전·합동·추가·사후) 컨설팅과 법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단독컨설팅으로 구분 운영

- 사전컨설팅 : 지표교육, 온라인, 현장방문, 탐방 등
- 합동컨설팅 :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 현장방문 평가인증 컨설팅
- 추가컨설팅 : 합동컨설팅 후 보완 및 평가인증 추가지원
- 사후컨설팅 : 평가인증 결과 연계 컨설팅(평가인증 C·D 등급 위주)
- 단독컨설팅 : 기존의 정기점검

※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목적, 업무추진 절차, 현지 지도점검 절차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후 관리 방식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매뉴얼」 준용

□ 기본방침

○ 중복점검 최소화

-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서류 간소화 및 어린이집 방문 횟수 최소화

※ **합동컨설팅**(대상 : 평가인증 D등급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규·컨설팅을 원하는 재인증 신청 어린이집) 정기점검 간주

* 합동컨설팅 중 영유아보호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실시

○ 협조체계 구축

-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상호신뢰 확보

- 사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고충 상담·해소에 노력하고 전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은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

□ 기관 역할 분담

- 도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컨트롤 타워, 컨설팅 정책개발 등
- 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컨설팅트 미 배치 시·군(안성,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재무회계 및 합동컨설팅
 - 컨설팅사례 DB구축·사후관리(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매월1회)
 -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실시
 - 재무회계·평가인증 컨설팅 종합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연 2회이상)
 - ※ 컨설팅트 미배치 시·군은 도·북부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업무처리

□ 추진내용

- 단독컨설팅 : 8,032개소(전체 어린이집의 70%)
 - 대 상 : ‘19년 합동컨설팅을 받지 않는(평가인증 미신청) 어린이집
 - ※ 2년 이상 단독컨설팅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없도록 계획 수립
 - 절 차 : 컨설팅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 점검기회 제공 후 실시
 - 중점내용
 - 아동·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보육교직원 근무실태, 평가인증 비리 등
 - 아동학대, 정원 및 반 편성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CCTV 관리·운영 실태
 - 안전관리(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보험가입 적정여부 등)
 -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의 사적 유용 등
 -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 확인)
 -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 보험 적정 관리, 정보공시 준수 여부 등

○ 특별(기획)점검 : 사회적 이슈, 반복 위반사례, 특정분야(아동학대· CCTV · 안전 등)
필요시 실시

※ 점검분야 및 일정 등 계획 별도수립·통보

○ 수시점검 :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

- 보육료 부정수급, 아동학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 중대 위반 행위,
사·군 기피민원 등(필요시 道-사·군 합동 점검)

※ 점검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

○ 합동컨설팅 : 3,65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0% 내외)

- 대 상 : ‘19년도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1순위 : 신규, 2순위 : 재인증)

※ 재인증 신청 어린이집 중 컨설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추진주체 및 주요내용

· 시·군·구 :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및 업무마감통보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 컨설팅, 재무회계 교육, 사례 DB구축, 사후관리,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홍보·관리 등

- 절 차

①대상 선정(보육통합시스템 등) 및 계획수립 ⇒ ②어린이집 자체점검 사전안내 ⇒
③어린이집 자체점검 ⇒ ④자체점검보고서(미흡한 영역·애로사항 등) 시·군에 제출
⇒ ⑤중점 컨설팅 내용 선정 ⇒ ⑥컨설팅 실시 및 개선사항 등 제언(「경기도형 보육컨
설팅」 결과통보) ⇒ ⑦개선내용 사군에 통보 ⇒ ⑧컨설팅 종료 결정 또는 재 컨설팅 실시

- 기타사항

· 컨설팅 인력부족 등 사정에 따라 위촉 컨설턴트 운영(보육컨설턴트
자격에 상당한자)가능

- 사전컨설팅(추진주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업무 담당자)
 - 대 상 : '19년도 평가인증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 주요내용 : 지표교육, 온라인, 현장방문, 탐방 등
 - 추가컨설팅(추진주체 : 경기도형 보육전문컨설턴트 등)
 - 대 상 : 합동컨설팅 후 보완 및 평가인증 추가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 주요내용 : 문서 미비사항 · 교사 상호작용 등
 - 사후컨설팅(추진주체 : 경기도형 보육전문컨설턴트)
 - 대 상 : 평가인증 통과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 주요내용 : 평가인증 유지관리를 평가인증 항목
- ※ 사전·추가·사후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결과통보서

컨설팅일시				컨설팅장소		
컨설팅대상자	어린이집명				성명	
	주소					
컨설팅내용						
컨설팅결과						
컨설턴트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그 밖의 안내사항						
<p>「영유아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관명</p>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p>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유아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실시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A, B, C 등급) 어린이집
- 사업량 : 9,311개소(남부 6,965, 북부 2,346)
- 지원액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그 외 어린이집 : 월 10만원
- 총사업비 : 14,37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9,311	14,374,800		3,371,220	11,003,580	
남부	6,965	10,744,800		2,015,700	8,729,100	
북부	2,346	3,630,000		1,355,520	2,274,4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37,396,490	8,576,400	14,445,290	14,374,800	
남부	27,782,690	6,345,000	10,692,890	10,744,800	
북부	9,613,800	2,231,400	3,752,400	3,630,0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방법 및 내용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 지급일로 함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으로 영아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외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 학습, -맞 연구활동(서적구입 등), 교육, 전문가 자문 등 경비
 - 학습활동과 무관한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교통비 등)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소화설비 등 재난대비 물품, 차량안전설비 등 보호장구,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전체 영아반의 아동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미지원
 - 2~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이 유효한(인증유지) 어린이집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인증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대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③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ex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요건 ②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

라. 지원 제외

- 지원연도 2년 이내에(2017년 1월 1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등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2-5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평가인증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조리원 별도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평가인증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 사업량 : 6,611명(남부 5,364, 북부 1,247)
- 지원내용 : 월 300천원 / 1인 / 1개소
- 사업비 : 23,8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611	23,799,600		5,203,800	18,595,800	
남부	5,364	19,310,400		3,513,240	15,797,160	
북부	1,247	4,489,200		1,690,560	2,798,64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61,847,700	9,305,700	28,742,400	23,799,600	
남부	47,663,700	6,893,700	21,459,600	19,310,400	
북부	14,184,000	2,412,000	7,282,800	4,489,200	

□ 사업 추진 안내

- 사업대상 : 평가인증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 ※ 평가인증(재인증) 결과 발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국·도비 조리원 인건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경과조치
 - ① 정원 39인 이하 : '16.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2세 이하 조리원(1947년 1월생~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② 정원 40인 이상 : '17.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1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 ①과 ②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리원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2-6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비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사업량 : 195개소(남부 145, 북부 50)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증·개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최대 99,190천원/개소 ※ 최대 132㎡(751,440원/㎡)까지 지원 ※ 국비 최대 49,595천원 지원
개·보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최대 30,000천원/개소
장비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최대 2,000천원/개소
개·보수 (장애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최대 30,000천원/개소
장비비 (장애아)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20인 미만 : 3,000천원/개소 20인 이상 : 4,000천원/개소

○ 총사업비 : 2,542,49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95	2,542,492	1,271,246	635,623	635,623	
남부	145	1,844,422	922,211	461,105	461,106	
북부	50	698,070	349,035	174,518	174,517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사업량	536개 (남부 374, 북부 162)	166개 (남부 120, 북부 46)	175개 (남부 109, 북부 66)	195개 (남부 145, 북부 50)	
합계	5,792,078	1,749,984	1,499,602	2,542,492	
남부	4,115,338	1,222,412	1,048,504	1,844,422	
북부	1,676,740	527,572	451,098	698,070	

□ 참고사항

○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IX-15>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시·도지사 변경승인사항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 지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해 실내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 환경조성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 사업량 : 11,682개소(남부 8,585, 북부 3,097)
- 사업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공기청정기 지원
- 지원기준
 - 렌탈비 : 1대 당 월 11천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 총사업비 : 6,570,828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대수)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합계	50,534	8,542,076	6,570,828	1,971,248	
남부	37,588	6,333,927	4,872,252	1,461,675	
북부	12,946	2,208,149	1,698,576	509,573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신청 및 지원)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연중 신청 받아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시점) 시·군에서는 신청일 기준 익월분부터 분기별 지급
 - ※ 12월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 (정산)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증빙자료(고지서 등) 확인 및 반납
- (지원 중단) 공기청정기 설치기준 위반 및 허위신청, 임의로 변경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조치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연 혁

-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사업량 : 199,066명(남부 150,468, 북부 48,598)
- 총사업비 : 1,457,609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99,066	1,457,608,500	1,015,729,000	255,081,488	186,798,012	
남부	150,468	1,101,711,300	756,015,100	192,799,478	152,896,722	
북부	48,598	355,897,200	259,713,900	62,282,010	33,901,29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4,218,864,650	1,344,095,590	1,417,160,560	1,457,608,500	
남부	3,170,990,050	1,003,411,590	1,065,867,160	1,101,711,300	
북부	1,047,874,600	340,684,000	351,293,400	355,897,200	

□ 2019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1월부터 적용)

○ 일반아동

(단위 : 원/월)

연령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0세	종일	454,000	485,000	354,000	485,000	60,000
	24시간	681,000	-	-	-	-
1세	종일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4시간	600,000	-	-	-	-
2세	종일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24시간	496,500	-	-	-	-
3세~5세	종일	220,000	-	-	-	-
	24시간	330,000	-	-	-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정부지원(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비고
종일	462,000	543,000	'18년 대비 부모보육료 3%, 기본보육료 10.9% 인상
방과후	232,000	462,000	

○ 시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3,100	4,100	'18년 대비 부모보육료 3%

3-2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연 혁**

-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도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사업량 : 155,476명(남부 114,508, 북부 40,968)
- 사업비 : 541,056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지원내용 : 29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20천원/인, 월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인, 월
- ※ 기존 운영비 외 처우개선비 3만원 및 운영비 8,120원 추가 지원
- 총사업비 : 541,056백만원

구분	사업량(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합계	155,476	541,056,480		541,056,480	
남부	114,508	398,488,000		398,488,000	
북부	40,968	142,568,480		142,568,4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

(단위: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635,582,449	547,954,287	546,571,682	541,056,480	
남부	1,205,347,073	404,502,391	402,356,682	398,488,000	
북부	430,235,376	143,451,896	144,215,000	142,568,480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료 : 만3~5세 아동 1인당 220천원/월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인,월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 3세이상 5세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는 월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30천원) 포함

** '18년 11월,12월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30천원) 포함

- 처우개선비는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지급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20원 추가 지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도(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단,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 사용은 제한

3-3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도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 연 혁

-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사업량 : 46명(남부 33, 북부 13)
- 지원내용 : 월 100천원/인
- 총사업비 : 65백만원(교부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교부금	도비	시군비	
합계	46	64,553	37,181	16,768	10,604	
남부	33	46,333	26,671	11,793	7,869	
북부	13	18,220	10,510	4,975	2,735	

□ 연도별 투자계획(교부금+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344,945	183,670	96,722	64,553	
남부	201,717	92,644	62,740	46,333	
북부	143,228	91,026	33,982	18,22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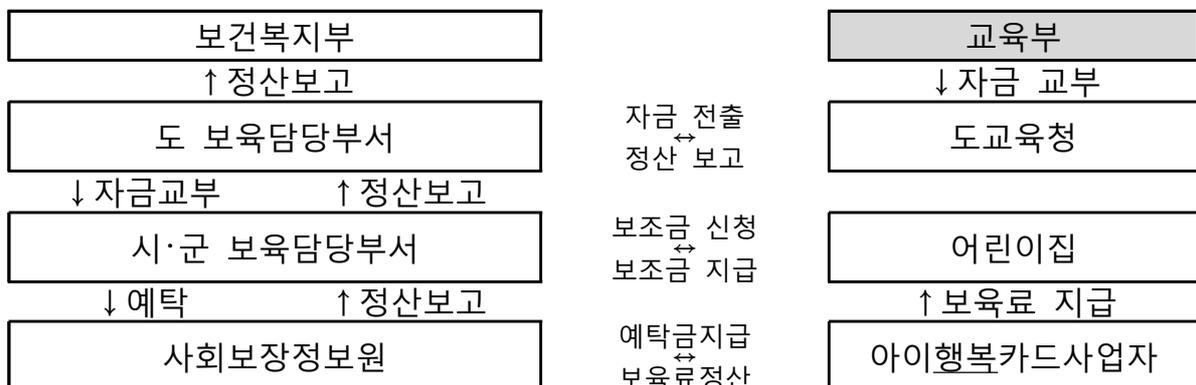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단가

구분	차상위이하 아동	장애아동
예산과목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월 100	232
방학중 종일제 보육	월 200	462

※ 방중 종일제 보육료 결제 중 50%는 보조금으로 지원, 보조금 신청 시기는 보육통합시스템상 매년 별도 통보

-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3-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2012년 3월 최초 시행
- 2013년 3월 3~4세까지 확대
- 2018년 3월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통합
- 2018년 3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16(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 지원대상 관련사항 보육통합시스템(시·군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활용
- 사업량 : 109,093명(남부 78,268, 북부 30,825)
- 지원기준 : 민간3세 89천원, 민간4,5세 66천원, 가정3~5세 9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309	286	312
정부지원 보육료	220	220	220
누리차액보육료지원금	89	66	92
부모부담보육료	-	-	-

※ 2019. 3월부터 적용

- 총사업비 : 94,59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09,093	94,597,936		23,178,794	71,419,142	
남부	78,268	69,415,000		13,766,000	55,649,000	
북부	30,825	25,182,936		9,412,794	15,770,142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256,873,373	75,187,107	87,088,330	94,597,936	
남부	186,979,913	54,012,309	63,552,604	69,415,000	
북부	69,893,460	21,174,798	23,535,726	25,182,93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시 입소일이 신청일

3-5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연혁**

- 2009년 7월 최초 시행,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
- 사업량 : 204,074명(남부 157,385, 북부 46,689)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 총사업비 : 365,326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구분	사업량(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04,074	365,325,850	256,288,000	63,932,024	45,105,826	
남부	157,385	281,745,050	194,765,400	49,305,384	37,674,266	
북부	46,689	83,580,800	61,522,600	14,626,640	7,431,560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178,527,760	427,238,660	385,963,250	365,325,850	
남부	908,805,560	329,123,660	297,936,850	281,745,050	
북부	269,722,200	98,115,000	88,026,400	83,580,8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지원
 -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군수가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같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19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19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II. 조사' 내용 참고
- (예시) '19.1.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19.1.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19.1.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19.4.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19.1.30~1.30까지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19.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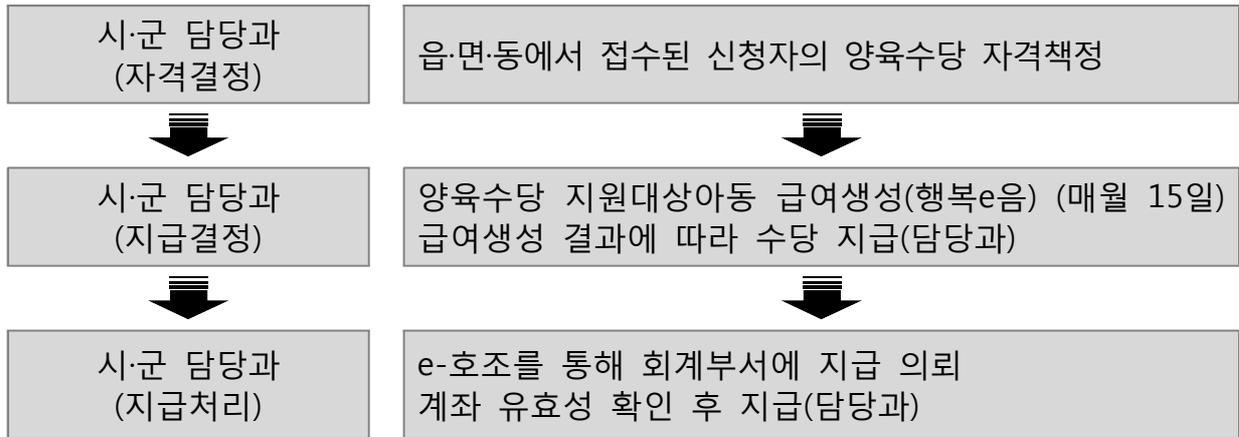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 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보호 중인 아동의 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은 급여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 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3-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도비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6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 사업량 : 74개소 76명(남부 60개소 62명, 북부 14개소 14명)
- 지원내용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3인, 통합1인)
- 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 / 인
- 총사업비 : 1,64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6	1,641,600		334,800	1,306,800	
남부	62	1,339,200		224,640	1,114,560	
북부	14	302,400		110,160	192,24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4,382,640	1,281,840	1,459,200	1,641,600	
남부	3,571,200	1,041,600	1,190,400	1,339,200	
북부	811,440	240,240	268,800	302,4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저소득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국내아동과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p>◆ 어린이집 당 3인까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따른 반 당 교사 1인 - 현원기준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 이상 반 50% 이상일 경우 또는 보육교사 배치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인원이 1 ~ 5명 : 보육교사 1인 · 보육인원이 6 ~ 10명 : 보육교사 2인 · 보육인원이 11명 이상 : 보육교사 3인 ※ 아동이 위의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p>◆ 어린이집 당 1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인원이 3명 (연령에 관계없이) 이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

나. 지원시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보육교사 적정배치, 어린이집인가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월의 익월부터

다. 운영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관리카드(아동명, 연령, 주소, 국적, 보호자 성명 및 직장명, 전화번호, 입·퇴소 시간, 아동사진 등) 작성 비치

라.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사업량 내 대체지정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 연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 ※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첨부1>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 소	(전화 :)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별			
	소 재 지	(전화 :)				
	원장성명		생년월일			
	보육정원	명(0세 명, 1세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어린이집 설비	보육실	m ²	양호실	m ²	대지	m ²
	놀이터	m ²	조리실	m ²	기 타	
	사무실	m ²	목욕실	m ²		
교직원	총 인 원		보육 교사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p>위와 같이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 귀하</p>						
※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아동 명단 1부 3. 외국인근로자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수 수 료	
					없 음	

3-7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 연장 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7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사업량 : 1,868개소(남부 1,305, 북부 563)
- 지원내용 : 운영비 월 400천원 보조
- 총사업비 : 8,96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868	8,966,400		2,332,800	6,633,600	
남부	1,305	6,264,000		1,297,440	4,966,560	
북부	563	2,702,400		1,035,360	1,667,04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25,754,400	7,322,400	9,465,600	8,966,400	
남부	17,756,400	5,022,000	6,470,400	6,264,000	
북부	7,998,000	2,300,400	2,995,200	2,702,400	

□ 사업 추진 안내

-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급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
 - ※ 일할계산 불요, 정액 지급
- 운영비는 시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3-8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도비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21개소(남부 16, 북부 5)
- 지원액
 - 운전기사 인건비 : 월 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채용시
 - 교재교구비 : 연 200만원
- 총사업비 : 33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1	330,000		87,800	242,200	
남부	16	248,000		55,000	193,000	
북부	5	82,000		32,800	49,20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871,712	192,000	349,712	330,000	
남부	659,712	144,000	267,712	248,000	
북부	212,000	48,000	82,000	82,0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나. 지원요건

- 공통사항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보육
- 운전기사 지원요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라. 제외대상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마. 지원중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혹은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3-9 시간제보육 지원

국·도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연 혁

-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 사업량 : 64반(남부 47, 북부 17)
-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구 분	제공기관	
적용시점	현 행 (2019.6.30.까지 적용)	개 선 (2019.7.1.부터 적용)
대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 국공립·법인·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사 호봉별 단가 100% - 민간가정어린이집 : 보육교사 4호봉 단가 - 공통 :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시 별도 지원 가능	보육교사 - 국공립·법인·육아종합지원센터 : <u>보육교사 호봉별 단가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u> - 민간가정어린이집 : <u>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u> - 공통 :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월 32만원(1개반 기준)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보육료	시간당 4천원(시간당 3천원 지원 월 80시간 이용 가능)	
주요역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사업 추진 안내 > 라. 지원 기준 > 1)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참조

구 분	관리기관
적용시점	현 행 (2019.1.1.~)
대 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2명, 북부1명)
인건비	(관리자) 호봉별 단가 100%(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사용자부담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월 85만원(남부), 55만원(북부)
주요역할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지원.관리

○ 총사업비 : 3,02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반)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4	3,019,680	1,532,000	782,170	705,510	
남부	47	2,253,480	1,148,900	581,120	523,460	
북부	17	766,200	383,100	201,050	182,05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8,019,656	2,321,312	2,678,664	3,019,680	
남부	5,872,656	1,664,312	1,954,864	2,253,480	
북부	2,147,000	657,000	723,800	766,2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지정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어린이집
-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 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소(지정기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 2015. 1.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현 행 (2019.6.30.까지 적용)	개 선 (2019.7.1.부터 적용)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수시점검 후 복지부, 지자체, 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 (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제공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 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시 별도 지원 가능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 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현행과 같음)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32만원 (1개반 기준)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적용시점	현행	개선 (기 시행중)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월 이용건수 20건 미만, 이용아동수 2명 미만, 이용시간 40시간 미만(1개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해당 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아중)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 '인건비 및 운영비' 의 세부 지원 내용 중 개선사항은 '19.7.1일부터 적용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3.1일부터 적용
	(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운영 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이용권 지급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평가인증 어린이집
 - ※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제외
- 사업량 : 5,487개소(남부 4,108, 북부 1,379)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 100만원/개소당
- 총사업비 : 5,482,440천원 (국비 60%, 도비 25%, 시군비 15%)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487	5,482,440	3,035,560	1,500,282	946,598	
남부	4,108	4,104,003	2,233,339	1,099,169	771,495	
북부	1,379	1,378,437	802,221	401,113	175,103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5,927,980	5,179,004	5,266,536	5,482,440	
남부	11,819,928	3,806,805	3,909,120	4,104,003	
북부	4,108,052	1,372,199	1,357,416	1,378,437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연중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 ※ 재원아동 수를 감안,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된 교재교구비 전액 환수

3-11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도비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 사업량 : 42개소(남부 29, 북부 13)
- 지원내용 :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00~280천원(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천원/월	250천원/월	260천원/월	270천원/월	280천원/월
61~80%	220천원/월	230천원/월	240천원/월	250천원/월	260천원/월
81~100%	200천원/월	210천원/월	220천원/월	230천원/월	240천원/월

- 총사업비 : 107,946천원 (국비 60%, 도비 25%, 시군비 15%)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42	107,946	57,632	28,787	21,527	
남부	29	74,534	38,550	19,277	16,707	
북부	13	33,412	19,082	9,510	4,820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금 전액 환수

3-12 차량운영비 지원

국·도비

농어촌소재,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접근성 강화 및 장애아동의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1,050개소(남부 635, 북부 415)
- 사업내용 : 농어촌소재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연 240만원/개소당
- 총사업비 : 2,337,905천원(국비 60%, 도비 25%, 시군비 15%)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050	2,337,905	1,268,762	617,986	451,157	
남부	635	1,412,348	740,643	353,925	317,780	
북부	415	925,557	528,119	264,061	133,377	

※ 시군별 차등보조 적용

□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7,139,661	2,394,875	2,406,881	2,337,905	
남부	4,133,952	1,274,458	1,447,146	1,412,348	
북부	3,005,709	1,120,417	959,735	925,557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 어린이통합 버스신고필증 보관(시장·군수 제출 요구 시 제출)
 - ※ 9인승 이상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받아야 함
 -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된 차량운영비 전액 환수

어린이집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공시내용 : 7개분야 18개항목
- 공개방법 : 아이사랑보육 포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포털
- 강제규정 : 정보 미공개 혹은 거짓 공개시 시정명령 실시
※ 사업시작연도 : 2014년 1월

□ 주요 공시내용(7개 분야)

- 어린이집 기본현황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 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4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비예산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결정방법

-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道에서 결정

□ 2019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309	286	312	312	전년대비 2%인상

-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 0~2세 : 정부지원단가 적용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료는 정부기준(지침)에 따름

□ 2019년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 현황

(단위 : 천원/월)

보 육 연 령	지원액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	
	계	정부	道	수납한도	부모부담	수납한도	부모부담	수납한도	부모부담
만0세	454	454	-	454	-	454	-	454	-
만1세	400	400	-	400	-	400	-	400	-
만2세	331	331	-	331	-	331	-	331	-
만3세	220	220	89/92	220	-	309	-	312	-
만4~5세	220	220	66/92	220	-	286	-	312	-

※ 도 지원액(누리차액 보육료)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해당

- 도지원액 : 92천원(가정 3~5세), 89천원(민간 3세), 66천원(민간4~5세)

3-15 어린이집 필요경비

비에산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수납주기 및 한도액

항 목		내 역	주기	한도액 및 상한액	
				국공립 한도액	민간·가정 상한액*
입 학 준비금	상 해 보험료	상해보험료(既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연	100,000원 (필요시 세부 한도액 시·군 결정)	100,000원 (시·군 결정)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월	26,000원	26,000원 (시·군 결정)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월	51,390원	80,000원 (시·군 결정)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135,000원 (시·군 결정)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요비용,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등	연	200,000원	312,000원 (시·군 결정)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40,000원 * 1식 2,000원	50,000원 (시·군 결정)
지자체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월	34,500원	50,000원 (시·군 결정)

※ 부모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납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주기와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는 道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
- 각 시군별 전년도 연간 필요경비의 1.5%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단, 2019년도 항목별 상한액 준수 필요

□ 필요경비 항목별 세부내역

가.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 ※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뀌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재입소료', '재원료')별도 비용 수납 금지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100,00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100,000원 / 시장·군수 결정
 -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한도액으로 수납
- 필요시 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를 구분하여 한도액 결정
 - ※ 시·군에서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를 구분 결정하였을 경우 항목별 구분결정 한도액 이상을 수납할 수 없음에 유의

나.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대상 : 24개월 이상 영유아
 ※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 편성)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간 : 낮 12시 ~ 오후 6시
- 대체프로그램제공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51,39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80,000원 / 시장·군수 결정

다.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105,00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135,000원 / 시장·군수 결정

라.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권고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26,000원(이용자에 한함)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26,000원 / 시장·군수 결정(이용자에 한함)

마. 행사비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200,00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312,000원 / 시장·군수 결정

바.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 시·군에서는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과 1식당 단가를 어린이집에 안내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40,000원(월 20식 기준 / 1식 2,00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50,000원(월 20식 기준) / 시장·군수 결정

사.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 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수납주기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 34,500원
- 수납주기별 민간·가정 상한액 : 60,000원 / 시장·군수 결정

□ 필요경비 관련 안내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예시 :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결정토록 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수납한도액을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 시장·군수가 수납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호자협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 등으로 정하는 것은 법 제38조 위반임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 (법 제25조 제4항 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은 시군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운영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이며, 정해진 사항은 수납액이 아닌 수납한도액인 만큼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필요경비 관련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인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시점부터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보호자에게 반환하고 장래 동일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실시(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

○ 과거에 시장·군수로부터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법 제45조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8조에 따른 보육료 등(필요경비)을 수납한 경우

- 형사고발 조치(법 제54조제4항제6호)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4-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0년(정부지원), 2003년(정부미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원장·조리원
 -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교사근무환경개선비 미지원)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60,217명(남부 44,875, 북부 15,342)
- 지원내용

구	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미인증 어린이집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월12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월37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월42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 60천원/인

○ 총사업비 : 120,73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0,217	120,738,840		28,690,860	92,047,980	
남부	44,875	89,826,000		17,104,344	72,721,656	
북부	15,342	30,912,840		11,586,516	19,326,324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356,993,129	119,258,000	116,996,289	120,738,840	
남부	266,125,409	89,392,400	86,907,009	89,826,000	
북부	90,867,720	29,865,600	30,089,280	30,912,84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임신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

- 지급 대상자는 인증이 유효한(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교직원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인증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지급방식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관리자 제외)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56,319명(남부 41,656, 북부 14,663)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 총사업비 : 33,559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6,319	33,559,080		16,779,540	16,779,540	
남부	41,656	24,876,720		12,438,360	12,438,360	
북부	14,663	8,682,360		4,341,180	4,341,1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91,366,312	25,489,672	32,317,560	33,559,080	
남부	67,672,560	18,814,680	23,981,160	24,876,720	
북부	23,693,752	6,674,992	8,336,400	8,682,36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월급형 대체교사도 동일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적용, 관리자 제외)
 -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임신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처우추가” 표시 일원화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전액 지급)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3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2년, 2012년(다문화), 2018년(영아심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구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반(0,2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3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③ 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사 업 량 : 31,330명(남부 22,845, 북부 8,485)

- 총사업비 : 17,97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31,330	17,974,800		4,263,756	13,711,044	
남부	22,845	13,203,000		2,510,616	10,692,384	
북부	8,485	4,771,800		1,753,140	3,018,66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50,137,203	15,542,625	16,619,778	17,974,800	
남부	36,378,858	11,219,400	11,956,458	13,203,000	
북부	13,758,345	4,323,225	4,663,320	4,771,8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임신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특수근무” 표시 일원화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급형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시간연장교사
 - ※ 단,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시간연장 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은 본 지침 양성교육기관 참조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3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사업량 : 24,169일(남부 15,073, 북부 9,096)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일80천원), 조리원(일66.8천원) 지원
- 총사업비 : 1,80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일)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2,933	1,806,366		494,063	1,312,303	
남부	15,073	1,177,566		251,343	926,223	
북부	7,860	628,800		242,720	386,08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5,826,903	2,045,069	1,975,468	1,806,366	
남부	4,044,546	1,552,569	1,314,411	1,177,566	
북부	1,782,357	492,500	661,057	628,8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 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	○	○	×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	○	○	○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	○	○	○	
	건강검진	1일	○	○	○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	○	○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	×	×	○	
	출산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

-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는 국비 대체교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반드시 안내
-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 최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게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나. 사업관리

○ 채용방법(원장 채용)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 활용 및 연계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소지자여야 함
- 조 리 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이외(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기준 준용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관리 등 준용

다.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0,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반영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조리원 : 일 66,8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201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반영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으로 지급 가능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공공형·가정민간 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라.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

4-5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치료사 포함)
- 사업량 : 12,389명(남부 7,849, 북부 4,540)
-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6,06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2,389	16,064,577	8,680,000	4,141,990	3,242,587	
남부	7,849	10,177,510	5,329,300	2,548,073	2,300,137	
북부	4,540	5,887,067	3,350,700	1,593,917	942,45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47,826,971	16,434,744	15,327,650	16,064,577	
남부	30,598,034	10,570,744	9,849,780	10,177,510	
북부	17,228,937	5,864,000	5,477,870	5,887,067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지원대상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시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다. 지원단가 : 월 11만원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사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정부지원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월 포함 3개월)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6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도비

영아반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 사업량 : 42,773명(남부 31,795, 북부 10,978)
- 지원내용 : 월 22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11,85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42,773	111,855,619	61,799,000	29,473,605	20,583,014	
남부	31,795	83,147,285	45,077,000	21,586,171	16,484,114	
북부	10,978	28,708,334	16,722,000	7,887,434	4,098,90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337,465,465	113,854,000	111,755,846	111,855,619	
남부	250,566,957	84,456,000	82,963,672	83,147,285	
북부	86,898,508	29,398,000	28,792,174	28,708,33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지자체 지원 포함)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다. 지원단가 : 월 22만원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7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국·도비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연역

- 시행시기 : 2012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 사업량 : 6,627명(남부 4,810, 북부 1,817)
- 지원내용 : 월 75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6,048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627	6,047,564	3,356,957	1,600,565	1,090,042	
남부	4,810	4,389,457	2,387,187	1,143,823	858,447	
북부	1,817	1,658,107	969,770	456,742	231,595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8,462,447	6,422,253	5,992,630	6,047,564	
남부	13,365,692	4,616,325	4,359,910	4,389,457	
북부	5,096,755	1,805,928	1,632,720	1,658,107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4-8 대체교사 인건비

국·도비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
- 사업량 : 752명(남부 561, 북부 191)
- 지원내용 : 1일 8시간 근무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월 2,178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20,87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52	20,873,333	11,539,000	5,504,033	3,830,300	
남부	561	15,569,333	8,451,000	4,047,233	3,071,100	
북부	191	5,304,000	3,088,000	1,456,800	759,20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42,401,083	8,457,750	13,070,000	20,873,333	
남부	31,643,373	6,298,040	9,776,000	15,569,333	
북부	10,757,710	2,159,710	3,294,000	5,304,0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최대 10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0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연가(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지원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19년 1월 ~ '19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 단, '18년까지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단가) 월 2,178천원, '19년 1월부터 적용

구분	2019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746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교사 지원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희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4-9 보조교사 인건비 국·도비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70% 이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
 -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 사업량 : 12,166명(남부 9,276, 북부 2,890)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973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12,338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2,166	112,337,761	62,262,000	29,681,890	20,393,871	
남부	9,276	85,653,428	46,668,000	22,335,257	16,650,171	
북부	2,890	26,684,333	15,594,000	7,346,633	3,743,70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226,456,103	48,876,268	65,242,074	112,337,761	
남부	172,654,213	36,971,200	50,029,585	85,653,428	
북부	53,801,890	11,905,068	15,212,489	26,684,333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①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②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2) 지원인원 : '1) 지원대상' 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지원(1개소 당 최대 2명 지원)

- ①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② 영아반 6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 이상)

나. 세부기준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가.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지역 실정에 따라 '가. 지원기준'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가.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기준 충족 시 정원충족률 70% 미만도 선정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행정처분'의 범위
 -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또는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5)~6)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지원기간 중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보육사업안내 X-16-바. 참조)로 적발되거나 어린이집 또는 원장이 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가 채용 후 6개월 이내까지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 미이수 시,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단가)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3천원* 지원(19.1월 적용)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 (참고) III.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시간)에 한해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 대행 가능

라. (사업기간) '19년 3월 ~ '20년 2월

마.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18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 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영아반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영아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준수
-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19.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0년, '21년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보육업무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외의 시간에 담임교사의 업무수행· 담임교사가 1일 이상 부재 시 대체 담임교사로서 업무수행·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수행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사업대상

- 모든 유형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 1. 반수는 선정 당시 18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반의 개수
 - 2. 반구성은 기존반 유지 또는 통합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가능
 - 3. 각 반은 18시 이후 반별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교사 수 산정 방법
 -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
 -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 영아반/장애아반 보조교사 지원시설은 영아반/장애아반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 가능
 - (예외)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인 경우
 - * 18시 이후 종일반 이용 등록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50% 이상일 때 1명 지원 가능(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로 채용)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 종일반 보조교사의 근로조건, 지원단가, 자격은 영아반/장애아반 보조교사의 규정 준용
 - 단, 종일반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은 맞춤형 하원 시간 이후에 배치하고, 18:00~19:00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 사업기간 : '19년 3월 ~ '20년 2월

라. 지원절차

- 종일반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의 선정, 채용 및 임면보고, 임면승인,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인건비 지급은 영아반/장애아반 보조교사의 규정 준용
 - 단, 종일반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종일반 이용아동 감소로 산식에 따른 지원 보조교사 수가 계획보다 축소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과 산정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 중단

마. 유의사항

- 영아반/장애아반 보조교사의 규정 준용
 - 출석부 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18시 종일반 운영정보 현황화 여부 등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어린이집은 현황(종일반 수, 배치 교사 수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18시 종일반 운영 정보 수정

4-10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도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8,959명(남부 6,495, 북부 2,464)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30~80% 지원
- 총사업비 : 169,708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8,959	169,707,780	93,108,440	44,657,310	31,942,030	
남부	6,495	123,033,000	66,466,200	31,997,160	24,569,640	
북부	2,464	46,674,780	26,642,240	12,660,150	7,372,39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437,803,226	121,736,007	146,359,439	169,707,780	
남부	316,002,207	87,095,507	105,873,700	123,033,000	
북부	121,801,019	34,640,500	40,485,739	46,674,780	

4-11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4,071명(남부 2,997, 북부 1,074)
 - 영아전담 357, 장애아전문 292, 시간연장 2,815, 장애아통합 607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영아전담	• 월지급액의 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명 100%
장애아전문	• 월지급액의 원장·보육교사 80%, 특수교사(장애영유아 보육교사) 80%+월30만원(수당), 치료사 100%+월30만원(수당), 조리원 1명 100%
시간연장	•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최대 5명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343,200원, 최대 5명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반별 445,000만원, 최대 5개반
장애아통합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2.9만원

- 총사업비 : 67,30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4,071	67,304,215	36,810,929	17,661,500	12,831,786	
남부	2,997	49,544,800	26,666,600	12,842,260	10,035,940	
북부	1,074	17,759,415	10,144,329	4,819,240	2,795,84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75,313,027	46,042,093	61,966,719	67,304,215	
남부	128,190,192	33,161,840	45,483,552	49,544,800	
북부	47,122,835	12,880,253	16,483,167	17,759,415	

4-12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도비

도비지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유능한 보육교사 확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검토」 도지사방침 결재(2013.3.7)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12~2013년 도비를 지원하여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
- 사업량 : 11개소(남부 8, 북부 3)
-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 30% 지원
- ※ 세부운영 : 2019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내용 준용
- 총사업비 : 2,19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1	2,195,800		456,860	1,738,940	
남부	8	1,695,800		306,860	1,388,940	
북부	3	500,000		150,000	350,000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7,654,926	2,992,170	2,466,956	2,195,800	
남부	6,154,926	2,492,170	1,966,956	1,695,800	
북부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참고

2018년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위 : 명)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보육 정원	교사수	비고 (인가일)
	총계	11개소		816	150	
	남부	8개소		659	122	
1	성남시	수내동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3	125	21	'14.03.01
2	용인시	죽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7-1	140	22	'14.01.15
3	안산시	스마트허브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18	98	18	'14.01.10
4	평택시	평택항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90	17	'14.11.26
5	시흥시	아이들세상	시흥시 정왕동 547-6	62	9	'14.12.23
6	시흥시	신천	시흥시 신천동 763-9	49	9	'14.12.24
7	군포시	늘푸른	군포시 산본동 1096	59	11	'15.07.01
8	이천시	해누리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71-1외 3필지	36	15	'14.01.13
	북부	3개소		157	28	
9	고양시	백송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45	9	'14.02.26
10	고양시	저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11번길 22-21	37	8	'14.05.01
11	고양시	대화소망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	75	11	'14.07.01

4-1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도비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6,613명(남부 5,043 / 북부 1,570)
- 지원대상 : 경기도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직무(6만원), 승급(12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 교재비 미지원
- 교육과정 : 직무(40시간), 승급(80시간), 원장사전직무(80시간)
- 총사업비 : 669,85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6,613	669,852	369,167	176,535	124,150	
남부	5,043	513,983	278,445	133,732	101,806	
북부	1,570	155,869	90,722	42,803	22,344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1,902,583	582,853	649,878	669,852	
남부	1,450,630	438,937	497,710	513,983	
북부	451,953	143,916	152,168	155,869	

※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19. 2월 중)

4-14 영아(심화)·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비에산

영아(심화)·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인원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합		계	8,060명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160시간)	· 교육 희망 보육교사	4,500명
	영아전문심화과정(20시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의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200명
	다문화전문과정(160시간)	· 교육 희망 보육교사	360명

-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8개소
- 교육과정별 시간 및 수강료

과정명		교육시간	수강료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	·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 44만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20시간	· 10만원
	다문화전문과정	·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 44만원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0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②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③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 영아전문심화교육 선발 우선순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의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선발(수료증과 경력증명서로 확인)

- ※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평가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③기타 희망자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성적 8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 필수
 - ※ 영아전문심화과정은 제외

《수강방법》

-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www.dre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방법1 :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 취업 > 교육, 컨설팅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 방법2 : 상단 검색창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입력 후 수강신청

○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 영아·다문화전문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수료처리
- 시·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교육과정별 수료자 인센티브

과정명		수료자 인센티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특수근무수당(월3만원 / 인) 추가 지원
	다문화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 ※ 영아·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IV. 첨 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보육료 지원기준표·처우개선비 지원표

 - 주요 보육통계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9.1월 현재)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비고	
합계		운영 28개소(경기도2, 25시군 26개)				
1	경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2003.11.12		
2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2008.09.01		
3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2015.11.20		
4	성남시	엘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로 96번길 30-1 4층(북정동 667번지)	1993.03.01		
5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1999.07.10.		
6	용인시	용인송담대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2015.03.13		
7	안산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채플관 B6호(일동)	1994.05.01		
8	안양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1997.03.12		
9	평택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2007.10.02		
10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37	2006.08.03		
11	화성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도이리 산31-6번지)	2009.08.25		
12	광명시	사회복지법인한솔교육희망재단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2011.01.20		
13	군포시	안양대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2010.01.28		
14	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2014.12.22		
15	이천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길 38 (중리동)	2006.07.01		
16	오산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2015.09.01		
17	의왕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2001.01.19		
18	과천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2013.11.01		
19	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2016.04.27		
20	하남시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125 5,6층 (풍산동 삼아프라자2)	2018.07.01		
21	경기북부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4층 (의정부동)	2008.02.27		
22	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2003.04.03.		
23	남양주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2015.07.17		
24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2007.09.03		
25	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2012.06.01		
26	양주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고양길 226 여성보육비전센터	2013.04.10		
27	구리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2013.11.26		
28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2018.01.02.		

※ 미설치 시군(6) : 여주, 안성, 양평, 가평(신축중), 동두천, 연천

※ 이전 추진중(3) : 안산, 성남, 양주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2019. 2월 현재]

연번	교육기관명	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21개 기관(보육교사교육원 8, 대학 13)					
1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유현정	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408	235-2290	양성
2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구리시검배로61,3층	569-9090	양성
3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김성일	의정부시둔야로9	876-5546	양성
4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이만수	고양시덕양구토당로52,5층(능곡역프라자)	970-8100~1	양성
5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김정남	부천시 경인로 194, 2층	032-655-0453	양성
6	수원여대 보육교사교육원	이명선	수원시권선구온정로72,미림관105호	290-8065	양성
7	에듀케어 보육교사교육원	이창수	안양시만안구문예로35,6층(익성빌딩)	466-3131	양성
8	중앙 보육교사교육원	오명숙	성남시중원구양현로405번길7,2동8층(신야탑푸르지오 시티)	752-1217	양성
9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신재홍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750-5760	
10	경기과기대 산학협력단	신진국	시흥시경기과기대로269	496-4658	
11	한국복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지숙	평택시 삼남로 283	610-4714	
12	김포대학교	조정환	김포시월곶면김포대학로97	999-4299	
13	경북대학교 영유아교육원	박미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북대로 425	570-9925	
14	대림대 평생교육원	이상욱	안양시동안구임곡로29	467-4502	
15	동원대 평생교육원	정연욱	광주시곤지암읍경충대로26	760-0202	
16	명지대 자연사회교육원	신완식	용인시처인구명지로116	330-6117	
17	부천대 평생교육원	최재영	부천시원미구신흥로56번길25	032)610-0575	
18	수원과학대 평생교육원	이해영	화성시정남면세자로288	350-7518	
19	안산대 평생교육원	김주성	안산시상록구안산대학로155	400-7096	
20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병일	용인시기흥구강남로40	899-7075	
21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동두천시별마들로40번길30	870-2964	

보육료 지원기준표

(단위: 천원)

구 분		0세 (맞춤반)	1세 (맞춤반)	2세 (맞춤반)	3세	4세	5세	비 고	
수 납 한도액	국 공 립	454 (354)	400 (311)	331 (258)	220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별도 지원 (60)	
	민 간				302	280			
	가 정				305				
	시간 연장(시간당)	3.1 (장애아 4.1)							
	2 4 시 간	908	800	662	44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의 200%
지 원 단 가	보육료 (소득무관)	0~2세	454 (354)	400 (311)	331 (258)	220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별도 지원 (60)
		시간연장 (시간당)	3.1 (장애아 4.1)						
		24시간	681	600	496.5	330			보육료지원액의 150%
	누리차액 보육료 (법정차액)	민 간				82	60		잔액 지원
		가 정				85			
	장 애 아	462(누리과정 장애아 462)						만12세이하 미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시(차상위이하 : 100, 장애아동 : 232)							
기 본 보 육 료		485	264	179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장애아 543) (장애아방과후 462)	
가정 양육수당	0~5세	200	150	100					
	농어촌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200			100				

처우개선비 지원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수당	처우 개선비 추가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처우 개선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 사	영아반 (0~2세)	500	200	50	30	220		
		유아반 (3~5세)	530	110		90		330	*영유아혼합반220
	교사겸직원장	125		50			75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 사	영아반 (0~2세)	500	150	50	80	220		
		유아반 (3~5세)	530	110		90		330	
	원 장	교사겸직 원장	275	150	50			75	
		원 장	150	150					

※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인 경우 도비지원 처우개선비 △3만원(누리과정은 △5만원)

주요보육통계표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총 영유아수 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유치원 이용 유아수 ③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전국(%)	2,904,953(100)	1,415,742(48.7)	675,998(23.3)	813,213(28.0)	
경기도	(%)	816,247(100)	393,149(48.2)	189,645(23.2)	233,453(28.6)
	전국대비%	(28.1)	(27.8)	(28.1)	(28.7)
서울시(%)	471,155(100)	226,959(48.2)	85,213(18.1)	158,983(33.7)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9,171(100)	3,602(9.2)	1,377(3.5)	748(1.9)	13,518(34.5)	18,651(47.6)	164(0.4)	1,111(2.8)	
경기도	(%)	11,682(100)	745(6.4)	67(0.6)	124(1.1)	3,801(32.5)	6,617(56.6)	69(0.6)	259(2.2)
	전국대비	(29.8)	(20.7)	(4.9)	(16.6)	(28.1)	(35.5)	(42.1)	(23.3)
서울시(%)	6,008(100)	1,481(24.7)	27(0.4)	106(1.8)	1,734(28.9)	2,369(39.4)	33(0.5)	258(4.3)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732,324(100)	230,508(13.3)	128,810(7.4)	54,900(3.2)	886,818(51.2)	344,412(19.9)	5,451(0.3)	81,425(4.7)
경기도	(%)	467,296(100)	52,474(11.2)	5,801(1.2)	10,089(2.2)	255,158(54.6)	122,799(26.3)	18,920(4.0)
	전국대비	(27.0)	(22.8)	(4.5)	(18.4)	(28.8)	(35.7)	(37.7)
서울시(%)	263,157(100)	89,293(33.9)	1,948(0.7)	5,909(2.2)	103,278(39.2)	42,957(16.3)	1,038(0.4)	18,734(7.1)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415,742(100)	200,783(14.2)	92,787(6.6)	41,298(2.9)	711,209(50.2)	302,674(21.4)	4,360(0.3)	62,631(4.4)	
경기도	(%)	393,149(100)	46,461(11.8)	4,373(1.1)	7,743(2.0)	208,017(52.9)	109,721(27.9)	1,747(0.4)	15,087(3.8)
	전국대비%	(27.8)	(23.1)	(4.7)	(18.7)	(29.2)	(36.3)	(40.1)	(24.1)
	정원충족률	84.1%	88.5%	75.4%	76.7%	81.5%	89.4%	85.0%	79.7%
서울시	(%)	226,959(100)	79,732(35.1)	1,714(0.8)	4,997(2.2)	87,658(38.6)	38,323(16.9)	826(0.4)	13,709(6.0)
	정원충족률	86.2%	89.3%	88.0%	84.6%	84.9%	89.2%	79.6%	73.2%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3,123	426	177	1,000	247	8,104	234	309	2,358	268
경기도	3,214	43	21	316	11	1,857	46	42	610	268
(전국대비%)	(24.5)	(10.1)	(11.9)	(31.6)	(4.5)	(22.9)	(19.7)	(13.6)	(25.9)	(100)
서울시	2,736	39	9	354	93	2,088	70	83	-	-
	(전국대비%)	(21.3)	(9.2)	(5.1)	(35.4)	(37.7)	(25.8)	(29.9)	(26.9)	-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18. 12월말)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33,419(100)	38,975(12.0)	239,996(72.0)	2,017(0.6)	633(0.2)	927(0.3)	1,170(0.4)	30,634(9.2)	19,067(5.7)
경기도	92,579(100)	11,604(12.5)	66,597(71.9)	390(0.4)	65(0.1)	273(0.3)	337(0.4)	10,155(11.0)	3,158(3.4)
(전국대비%)	(27.8)	(29.8)	(27.7)	(19.3)	(10.3)	(29.4)	(28.8)	(33.1)	(16.6)
서울시	55,336(100)	5,978(10.8)	39,944(72.2)	450(0.8)	64(0.1)	163(0.3)	172(0.3)	4,283(7.7)	4,282(7.7)
	(전국대비%)	(16.6)	(15.3)	(16.6)	(22.3)	(10.1)	(17.6)	(14.7)	(14.0)